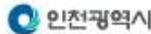

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 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4월 14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감염병 관리과	담당자	• 방역의료팀장 임미숙 ☎440-7850 • 담당자 이은실 ☎440-7849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**  
- 4.14.~5.4. 시행, 권고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-  
-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,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정명령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(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)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.

대상자는 병·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(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·후각소실, 근육통 등)으로 의사·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.

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

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와 관련해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.

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처벌(2백만 원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다.

한편, 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타인과의 접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,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두기,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<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, 2021.04.11. (일)>



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1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'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'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.